

1.개요

-교육 과학 기술부에서는 각 교사내에 생활하는 학생 및 교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사내 공기질 측정을 시행하여 위해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제기된 문제를 효율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내 공기질 측정을 권고사항으로 두고 있다.

2.대상

-전국에 유치원, 초·중·고 및 대학이 모두 포함되며, 각 지자체 관할 교육지원청 에서 측정사항에 관한 것을 권고 지도 하고 있다.

3.해당 법령

- 학교보건법 제4조
-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3조의3
-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
(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6-10호)



4. 실내 공기질 측정항목 및 기준

측정항목		유지기준	적용시설
실 내 공 기 질	미세먼지	100($\mu\text{g}/\text{m}^3$) 이하	모든 교실
	이산화탄소	1000(ppm) 이하	모든 교실
	폼알데하이드	100($\mu\text{g}/\text{m}^3$) 이하	모든 교실
	총부유세균	800(CFU/ m^3) 이하	모든 교실
	낙하세균	10 (CFU/실당)이하	보건실, 식당
	일산화탄소	10(ppm) 이하	개별 난방/ 도로변 교실
	이산화질소	0.05(ppm) 이하	개별 난방/ 도로변 교실
	라돈	148(Bq/ m^3) 이하	지하 교실
	총휘발성유기화합물	400 ($\mu\text{g}/\text{m}^3$) 이하	신축 건물
	석면	0.01 (개/CC)이하	석면 사용 학교
	오존	0.06 (ppm)이하	행정실 교무실 등
	진드기	100(마리/) 이하	보건실



5. 실내 환경 측정항목 및 기준

측정항목		유지 및 관리 기준	적용시설
환기		21.6m ³ 이상(1인 1시간)	모든 교실
채광 및 조명	자연조명	주광율 5% 확보(최소 2%이상) 최대조도와 최소조도 비 10:1 이하	모든 교실
	인공조명	300LUX 이상(책상면) 최대조도와 최소조도 비 3:1 이하	칠판 및 교실의 조도 각각 9곳 이상
온도 · 습도	실내온도	18 ~ 28℃	모든 교실
	비교습도	30% ~ 80%	모든 교실
상·하수도		•관리기준에 의하여 설치·관리	
화장실	설치	•남녀구분, 수세식 및 충분한 면적과 수량 확보 •손 씻는 시설 및 소독시설	
	소독	•4월~9월: 주 3회 이상 •10월~익년 3월: 주 1회 이상	
폐기물		•발생감량 및 분리배출	
소 음		•55데시벨 이하(교사내)	
식기·식품		•청결유지, 위생적 보관 및 관리	
먹는 물	급수시설	•상수도: 직결급수로 공급 •지하수: 저수조 경유	
	유지관리	•저수조: 매월1회 이상 점검, 연2회 이상 청소 •먹는물은 수질 기준에 적합한 물 제공	
점검·지원		•학교장: 일상·정기·특별점검 실시후 조치 •교육감(교육장): 점검방법 지도 및 전문이력 지원	



4.측정항목 및 기준

측정항목		유지 및 관리 기준	적용시설
환기		21.6m ³ 이상(1인 1시간)	모든 교실
채광 및 조명	자연조명	주광율 5% 확보(최소 2%이상) 최대조도와 최소조도 비 10:1 이하	모든 교실
	인공조명	300LUX 이상(책상면) 최대조도와 최소조도 비 3:1 이하	칠판 및 교실의 조도 각각 9곳 이상
온도 · 습도	실내온도	18 ~ 28℃	모든 교실
	비교습도	30% ~ 80%	모든 교실
상· 하수도		•관리기준에 의하여 설치·관리	
화 장 실	설치	•남녀구분, 수세식 및 충분한 면적과 수량 확보 •손 씻는 시설 및 소독시설	
	소독	•4월~9월: 주 3회 이상 •10월~익년 3월: 주 1회 이상	
폐기물		•발생감량 및 분리배출	
소 음		•55데시벨 이하(교사내)	
식기·식품		•청결유지, 위생적 보관 및 관리	
먹는 물	급수시설	•상수도: 직결급수로 공급 •지하수: 저수조 경유	
	유지관리	•저수조: 매월1회 이상 점검, 연2회 이상 청소 •먹는물은 수질 기준에 적합한 물 제공	
점검·지원		•학교장: 일상·정기·특별점검 실시후 조치 •교육감(교육장): 점검방법 지도 및 전문이력 지원	

